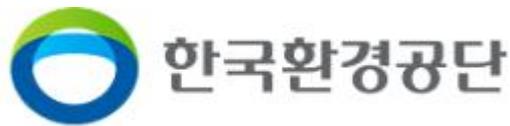


「시·도 자원순환성과관리」

2022년도 추진실적 제출 작성가이드

2023. 9.



해당 자료는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추진실적 제출을 위한 작성 가이드로
자원순환 추진실적 작성·제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자원순환성과관리 콜센터 (1644-2355)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성과부 (032-590-5073)

목 차

1. <u>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개요</u>	1
2. <u>생활폐기물(가정) 추진실적 작성방법</u>	6
1. 적용대상 및 추진실적 작성 기본 원칙	6
2. 배출방식별 추진실적 산정방법	7
3. <u>사업장폐기물(공공환경기초시설) 추진실적 작성방법</u>	12
1. 적용대상 및 추진실적 작성 기본 원칙	12
2. 보고서 제출 방법에 따른 추진실적 작성방법	12
4. <u>성과관리시스템 사용 메뉴얼</u>	15
1. 추진실적 작성 절차 및 유의사항	13
2. 로그인 및 회원가입	13
3. 시군구 추진실적 작성(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16
4. 시도 추진실적 작성(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22
5. <u>참고자료 및 Q&A</u>	
참고 1.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	22
참고 2. 잔재물의 개념 및 산정방식	22

1. 목적

- 해당 가이드는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처분을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의 추진실적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제작되었다.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 자원순환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는 시·도지사가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 및 관할구역의 자원순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의 자원순환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해야하고 정부로부터 해당 목표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2. 법적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15조(시·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시·도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 및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 목표설정·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지도·감독 해당 시·도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시·도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자원순환 목표 추진실적을 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자원순환정보시스템(www.recycling.info.or.kr) - 자원순환 성과관리 접속

-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예규 제649호, 2019.3.19.)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폐기물, 자원순환 목표설정·관리 등 세부사항 명시

3.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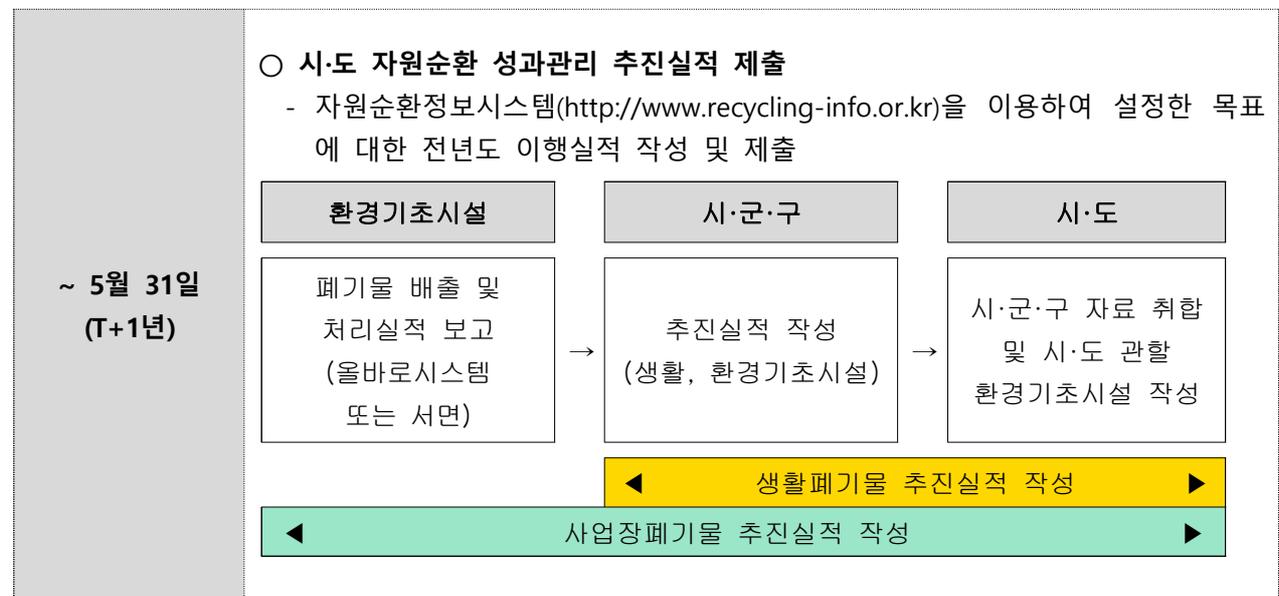
자원순환 목표설정(5년 주기)

연차별 목표설정 (‘18년~’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자원순환 연차별 목표설정(5개년) - 국가 자원순환 목표 달성 및 자원순환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 자체 목표 설정 (5개년 목표설정)한다. ※ ‘18년~’22년 목표설정 완료
-------------------------	---

자원순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매년)

목표 이행연도 (T년)	○ 연차별 설정된 목표를 이행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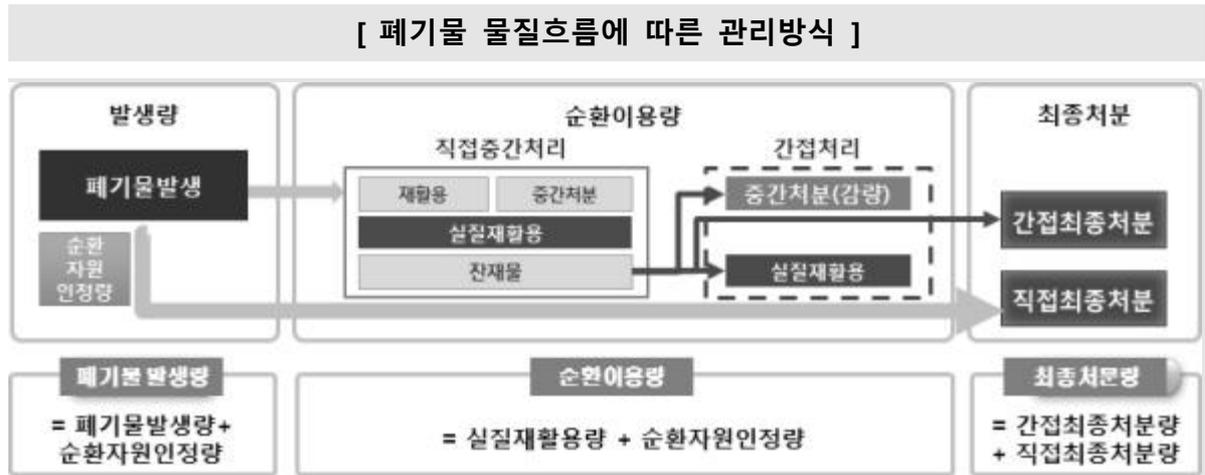
다음 해 1월 중 (T+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추진실적 확인 및 수정요청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통계 수치와 발생량 등 비교검토 및 수정
---------------------	--

↓

2~3월 중 (T+2년)	○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추진실적 평가자료 송부
------------------	------------------------------

4.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개념도

- 자원순환 성과관리란 폐기물의 발생에서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물질흐름에 따라 실질적인 순환이용량과 최종처분량에 대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적용대상 폐기물

- ① 관할구역(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제외)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로 1일 평균 300kg미만 배출되는 폐기물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된다.

- ① 종량제 등 혼합배출(이하 종량제)
- ②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이하 분리배출)
- ③ 음식물류 분리배출(가정 및 다량배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음식물)

- ② 시도 및 시·군·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다음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이하 “환경기초시설”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시도 연차별 목표설정 당시 기준으로 선정된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환경기초시설

-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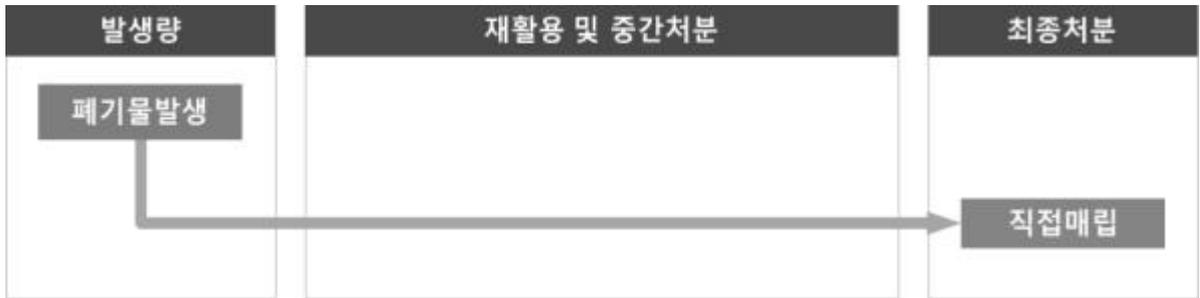
2) 자원순환 성과지표

① 최종처분율(%) :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

$$\text{최종처분율(\%)} = \frac{\text{최종처분량(직접최종처분량⁽¹⁾ + 간접최종처분량⁽²⁾)}{\text{폐기물 발생량 + 순환자원 인정량<sup>(3)

(단위 : 톤)</sup>$$

(1) 직접 최종처분량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최종처분시설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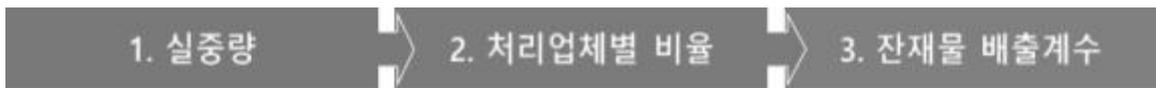
(2) 간접 최종처분량 : 중간처리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중 최종 처분하는 양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잔재물 발생량 산정 방법 >

- ① 실중량 : 대상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재활용하고 남은 잔재물의 양과 발생된 잔재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중량 단위로 관리 되었을 때 적용
- ② 처리업체비율 :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장(또는 지자체)의 폐기물을 혼합 처리하여 폐기물별 잔재물 발생량 등을 알 수 없을 때 적용(처리시설의 반입량 대비 잔재물 발생량 비율을 적용)
- ③ 배출계수 : 위탁처리시설의 폐쇄, 부도 등으로 잔재물 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한다.

※ 잔재물 산정기준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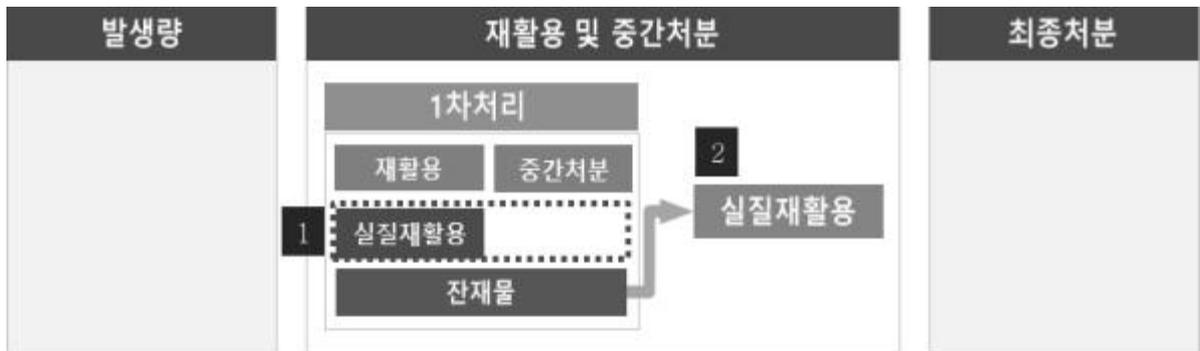
(3) **순환자원 인정량** :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의 생산량으로 한다. 다만, 재활용 과정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양은 제외한다.

② **순환이용률(%)** :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

$$\text{순환이용률(\%)} = \frac{\text{실질재활용량}^{(1)} + \text{순환자원 인정량}^{(2)}}{\text{폐기물 발생량} + \text{순환자원 인정량}} \times 100$$

(단위 :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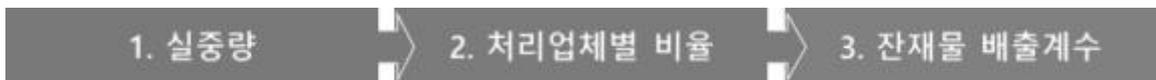
(1) **실질 재활용량** : 관할구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및 중간처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잔재물을 제외한 실제 재활용된 양(①의 양)과 발생된 잔재물 중 재활용으로 처리한 양(②의 양)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 잔재물 발생량 산정 방법 >

- ① **실증량** : 대상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재활용하고 남은 잔재물의 양과 발생된 잔재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증량 단위로 관리 되었을 때 적용
- ② **처리업체비율** :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장(또는 지자체)의 폐기물을 혼합 처리하여 폐기물별 잔재물 발생량 등을 알 수 없을 때 적용(처리시설의 반입량 대비 잔재물 발생량 비율을 적용)
- ③ **배출계수** : 위탁처리시설의 폐쇄, 부도 등으로 잔재물 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한다.

※ 잔재물 산정기준 우선순위



(2) **순환자원 인정량** :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의 생산량으로 한다. 다만, 재활용 과정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양은 제외한다.

1. 추진실적 작성 기본원칙

- (발생량) 시·군·구별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가정)을 기준으로 연간 발생량의 총량으로 산정한다.(「폐기물관리법」 제58조에 따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 (자가/위탁)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주체에 따라 구분된다.
 - 자가 처리 발생량은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및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처리한 폐기물량으로 산정한다.
 - 위탁 처리 발생량은 민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량과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한 폐기물량으로 산정한다.
- (처리 방법)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참고1.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
- (잔재물 산정방식) 생활폐기물을 자가 또는 위탁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의 발생 및 처리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①실중량(처리업체비율 포함)과 ②배출계수가 있다. [\[참고2. 잔재물 산정방식과 우선순위\]](#)
 - 실중량의 경우, 해당 폐기물이 1차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의 양과 처리량을 중량 단위로 관리하는 경우 사용한다.
 - 처리업체비율의 경우, 타 구역의 생활폐기물 등과 혼합 처리할 경우, 처리시설의 반입량 대비 잔재물 발생 및 처리량을 적용한다.
 - 배출계수는 위탁처리시설의 폐쇄, 부도 등 잔재물 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한다. 배출계수로 산정된 잔재물 발생량은 전량 최종처분된 것으로 본다.

[생활폐기물 적용 배출계수]

구분	종량제	분리배출	음식물류
재활용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0.585) - 기계적처리방법(0.278)	- 기계적처리방법(0.278)	- 혐기성 소화(0.193) - 퇴비화(0.274) - 사료화(0.247)
중간처분	소각(일반소각, 고온소각, 국가소각, 열분해, 고온용융)(0.2) 소각 외 중간처분(중화, 파쇄, 고품화 등)의 경우 1로 한다.		

2. 배출방식별 추진실적 산정방법

- ① (종량제 등 혼합배출) 재활용을 목적으로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과 음식물폐기물을 제외한 여러 성상이 혼합되어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의미한다. 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
- (예시) 음식물류가 종량제 봉투에 포함되어 배출되는 경우,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등 배출자 부담식으로 배출된 경우, 가로수거 폐기물, 불법투기 폐기물 등



- (발생량) 종량제 폐기물이 1차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 중간처분, 최종처분)에 반입된 양을 기준으로 한다.



- (직접최종처분량) 종량제 등 혼합배출 방식으로 수거된 생활폐기물을 최종처분의(매립,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1차 처리한 량으로 산정한다. → 직접 매립량
- (간접최종처분량)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의 방법으로 1차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생산한 생산품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최종처분(매립,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처리한 량으로 산정한다.
- (예시1) 종량제 폐기물을 자가 또는 위탁 소각 하는 경우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소각재, 비산재 등)을 최종처분(매립)의 방법으로 처리량으로 산정한다.

- (예시2) 타 지역의 폐기물 등을 혼합 처리할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폐기물 처리량에 해당 처리시설의 잔재물 최종처분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text{잔재물 최종처분비율} = \frac{\text{잔재물 최종처분량}}{\text{해당 처리시설의 처리량}}$$



- (실질재활용량) ①중간처리(재활용, 중간처분) 방법별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을 제외한 실제 재활용에서 사용된 양과 ②발생된 잔재물을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한 양을 합하여 산정한다.

- (예시1) 1차 처리시설에서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된 생활폐기물(가정)을 파봉 후 선별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쳐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한 양은 실질 재활용 양으로 산정한다.
- (예시2) 1차 처리시설에서 소각 방법으로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소각재 비산재 등)을 재활용 방법으로 처리한 양으로 산정하되 혼합 처리시에는 해당 처리시설의 잔재물 재활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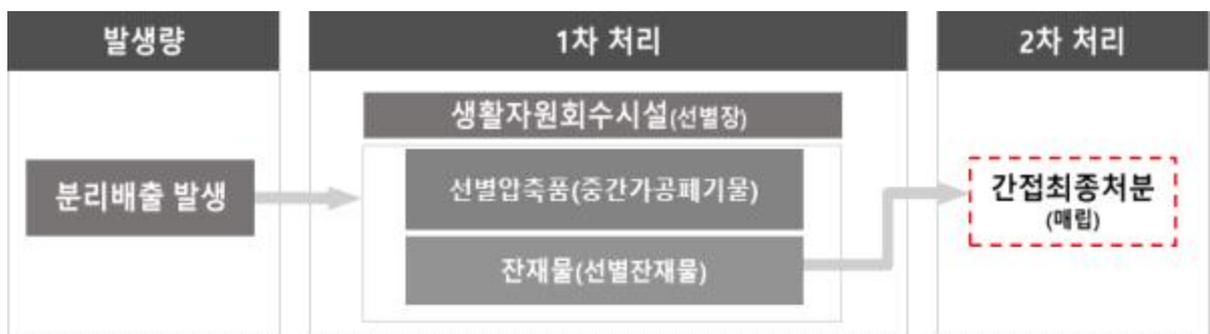
$$* \text{잔재물 재활용비율} = \frac{\text{잔재물 재활용량}}{\text{해당 처리시설의 처리량}}$$

②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을 시·군·구 조례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분리배출 폐기물이라 한다.



○ (발생량) ①공동주택 단지 외에서 발생한 분리배출 폐기물이 자가 또는 위탁하여 1차 처리시설로 반입된 양과 ②공동주택 등에서 민간 재활용업체(「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와 계약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판매한 양을 제출받아 합한 양으로 산정한다.

- (예시1) 공동주택 외의 분리배출 폐기물 발생량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된 분리배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생활자원회수시설) 및 민간위탁시설 반입량으로 산정한다.
- (예시2) 공동주택 단지의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은 민간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위탁 판매한 양으로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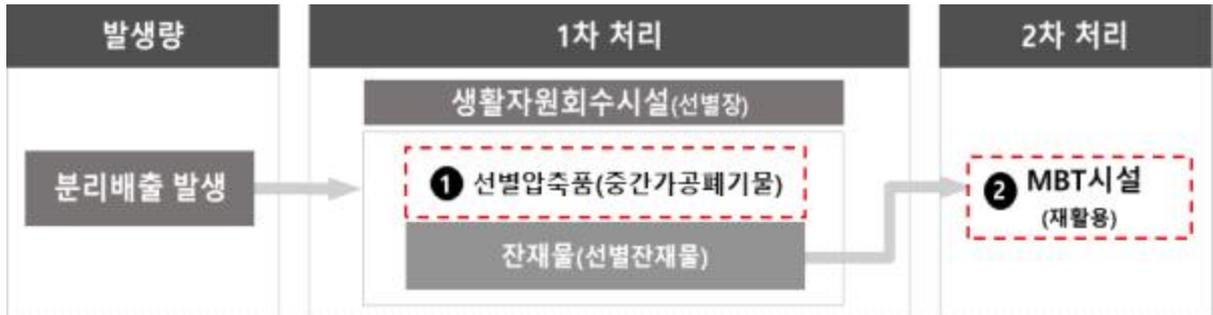


○ (간접최종처분량) 분리배출 폐기물을 재활용의 방법으로 1차 처리시설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최종처분(매립,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처리한 양으로 산정한다.

- (예시1)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분리배출 폐기물을 생활자원회수시설(선별장)로 반입하여 선별, 압축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최종처분(매립,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처리한 양으로 산정한다.

- (예시2) 공동주택단지별 민간 재활용사업자의 직접 위탁처리계약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잔재물량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민간 재활용사업자의 위탁처리량 대비 발생 잔재물을 최종처분의 방법으로 처리한 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text{잔재물 최종처분비율} = \frac{\text{잔재물 최종처분량}}{\text{해당 처리업체의 처리량}}$$



○ (실질재활용량) ①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제외한 실제 재활용에 사용된 양과 ② 발생한 잔재물을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한 량을 합하여 산정

- (예시1)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분리배출 폐기물을 생활자원회수시설(선별장)로 반입하여 선별, 압축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한 양으로 산정한다.

- (예시2) 공동주택단지별 민간 재활용사업자의 직접 위탁처리계약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잔재물량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위탁처리량에서 잔재물 발생 비율*에 따라 산정된 양을 제외한 양과 위탁처리량에서 잔재물 재활용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양의 합으로 산정한다.

$$* \text{잔재물 재활용비율} = \frac{\text{잔재물 재활용량}}{\text{해당 처리시설의 처리량}}$$

입력 예시 **분리배출 폐기물 자원순환 성과관리 추진실적 입력 방법**

[MENU] 목표이행관리 - [지자체]추진실적작성 - 시군구추진실적관리 - 생활폐기물 실적관리- 분리배출 

○ 실적관리-분리배출   

■ 재활용 처리현황 (단위: 톤)  

시군구	자가/위탁	폐기물 처리량	처리방법	재활용			처리업체코드	처리자	조회	산정기준	잔재물 발생 비율(%)	잔재물 발생량	산정기준	잔재물 발생 및 처리내역			실경 재활용량	회중 수정일	수정자
				처리장소		회중처리량								회중처리량	재활용량	처리자			
				시도	시군구														
1	은평구	자	21,660.8	(1000종료제)	서울특별시	은평구	99999999	은평환경	은평	실용	12.3%	2,667	실용	2,667	0	0	16,993.8	2022-01-06	조원숙
2	은평구	위	12,293	(2010이중간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99999999	민간수집상장	은평	비용	27.0	3,417.45	비용	0	3,417.45	0	6,875.55	2022-01-06	조원숙
33,953.8											6,084.45	2,667	3,417.45	0	27,869.35				

■ 중간처분 처리현황 (단위: 톤)  

시군구	자가/위탁	폐기물 처리량	처리방법	중간처분			처리업체코드	처리자	조회	산정기준	잔재물 발생 비율(%)	잔재물 발생량	산정기준	잔재물 발생 및 처리내역			실경 재활용량	회중 수정일	수정자
				처리장소		회중처리량								회중처리량	재활용량	처리자			
				시도	시군구														
0																			

■ 회중처분 처리현황 (단위: 톤)  

시군구	회중처리량	자가/위탁	처리장소		처리업체코드	처리자	조회	회중수정일	수정자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처리업체코드	처리자	조회	회중수정일	수정자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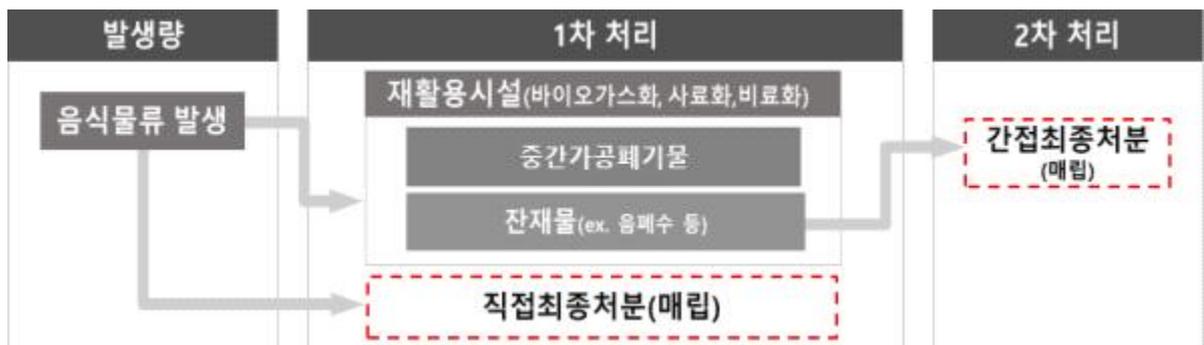
■ **재활용 처리현황** : ① 은평구 분리배출 폐기물 21,660.8ton 은평환경에 반입되어 자가처리 과정(선별)에서 발생한 잔재물 2,667ton 전량 중간처분(소각)함
 ② 공동주택(APT 등)에서 발생한 분리배출 폐기물 12,293ton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파악하기 어려워 산정기준 배출계수 선택(잔재물 발생 및 처리량 배출계수 적용 기준에 따라 자동 산정)

③ (음식물류 분리배출) ①가정 및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②음식물류 다량배출자 등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군·구 조례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한다.



○ (발생량) ①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또는 위탁하여 1차 처리된 양과 ②음식물 다량배출자 발생량을 합한 양으로 산정한다.

- (예시1) 가정에서 분리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RFID, 종량제)이 자가 또는 위탁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 중간처분, 최종처분)로 반입된 양으로 산정한다.
- (예시2) 음식물류 다량배출자의 경우 음식물류 다량배출자가 보고한 「폐기물관리법」 별지 제48호의4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내 수치의 합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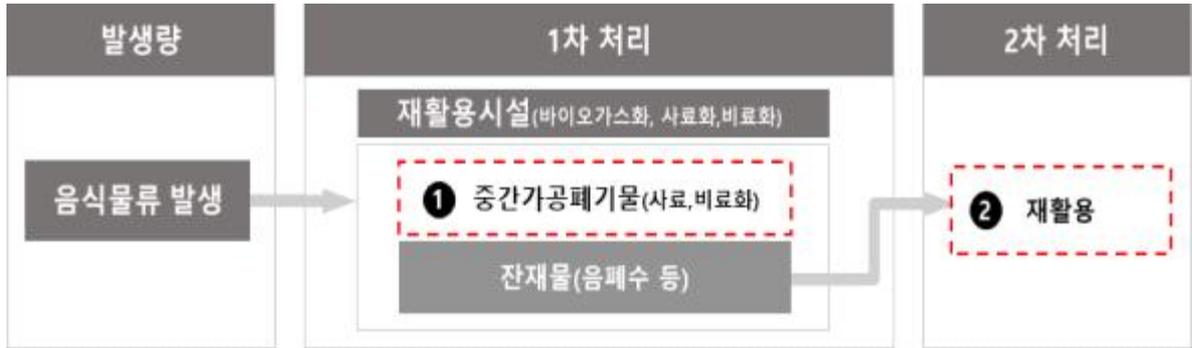


○ (직접최종처분량) 음식물류 폐기물 방식으로 배출된 폐기물을 최종처분(매립,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처리된 양으로 산정한다.

○ (간접최종처분량) 중간처리(재활용, 중간처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최종처분(매립,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처리한 양으로 산정한다.

- (예시1) 시·군·구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민간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음폐수 등)을 최종처분의 방법으로 처리한 양으로 산정
- (예시2) 타 지역 폐기물 등을 혼합 처리할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폐기물 처리량 대비 해당처리시설의 잔재물 최종처분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text{잔재물 최종처분비율} = \frac{\text{잔재물 최종처분량}}{\text{해당 처리업체의 처리량}}$$



- (실질재활용량) ① 중간처리(재활용, 중간처분) 방법별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제외한 실제 재활용에 사용된 양과 ② 발생한 잔재물을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한 양을 합하여 산정한다.
- (예시1) 1차 처리 재활용시설에서 음식물류 분리배출 방식으로 반입 처리한 양에서 중간처리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은 잔재물량을 제외한 실제 재활용된 양으로 산정한다.
 - (예시2) 1차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 방법으로 처리한 양으로 산정하되 혼합 처리 시에는 해당 시설의 잔재물 재활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text{잔재물 재활용비율} = \frac{\text{잔재물 재활용량}}{\text{해당 처리시설의 처리량}}$$

입력 예시 **음식물 폐기물 자원순환 성과관리 추진실적 입력 방법**

[MENU] 목표이행관리 - [지자체]추진실적작성 - 시군구추진실적관리 - 생활폐기물 실적관리- 음식물 **입력**

실적관리-음식물 연 차감 | 도공일 | 음식물다문화도

재활용 처리현황 (단위 : 톤) 입력하기 | 출력하기

시군구	자가/위탁	폐기물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장소				처리업체코드	처리자	조회	산정기준	잔재물 발생 비율(%)	잔재물 발생량	산정기준	잔재물 발생 및 처리내역		재활용량	처리자	실질 재활용량	최종 수검일
				시도	시군구	중간처분	최종처분													
1	광양시	자	16,679	(1004)직접 제	전라남도	광양시	99999999	생활폐기물과	소매	실증	1.32	1,221.6	실증	0	1,221.6	0		15,457.4	2022-01-03	
2	광양시	위	1,384.5	(2016.7.21제정	전라남도	광양시	99999999	민간재활용업체	소매	배출	27.4	373.35	배출	0	373.35	0		1,005.15	2022-01-03	
			18,063.5									1,600.95		0	1,600.95	0		16,462.55		

중간처분 처리현황 (단위 : 톤) 입력하기 | 출력하기

시군구	자가/위탁	폐기물 처리량	처리방법	중간처분				처리업체코드	처리자	조회	산정기준	잔재물 발생 비율(%)	잔재물 발생량	산정기준	잔재물 발생 및 처리내역		재활용량	처리자	실질 재활용량	최종 수검일	수검자
				시도	시군구	중간처분	최종처분														
												0			0	0	0		0	0	

최종처분 처리현황 (단위 : 톤) 입력하기 | 출력하기

시군구	최종처분량	자가/위탁	처리장소		처리업체코드	처리자	조회	최종수검일	수검자
			시도	시군구					

■ **재 활용 처리현황** : ①광양시 음식물 폐기물 16,679ton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탈수케익, 음폐수 등) 1,221.6ton을 전량 최종처분(매립)
 ②음식물 다량배출자에서 발생된 1,384.5ton을 민간재활용업체 위탁처리,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파악하기 어려워 산정기준 배출계수 선택(잔재물 발생 및 처리량 배출계수 적용 기준에 따라 자동 산정)

1. 추진실적 작성 기본원칙

- (발생량)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1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기준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으로 산정한다.
- 처리주체(자가/위탁) 구분 및 처리 방법 등은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 (잔재물 산정방식) 대상 환경기초시설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을 자가 또는 위탁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의 발생 및 처리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①실중량, ② 처리업체비율, ③배출계수가 있다. [\[참고2. 잔재물 산정방식과 우선순위\]](#)
 - 실중량의 경우, 해당 폐기물이 1차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의 양과 처리량을 중량 단위로 관리하는 경우 사용한다.
 - 처리업체비율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량 대비 잔재물 발생 및 처리비율을 적용한다.
 - 배출계수*은 위탁처리시설의 폐쇄, 부도 등 잔재물 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한다. 배출계수로 산정된 잔재물 발생량은 전량 최종처분된 것으로 본다.

*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9-53호) 별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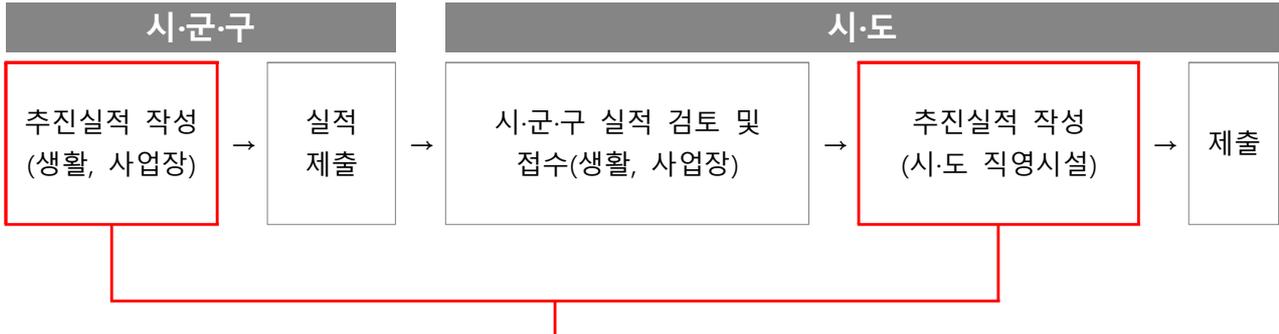
2. 보고서 제출 방법에 따른 추진실적 작성방법

- ①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자원순환 성과관리시스템 추진실적 작성 시 해당 실적보고서를 불러와서 작성한다.
- ② 수기(手記)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자원순환 성과관리시스템 추진실적 작성 시 목표이행관리 → [지자체]추진실적작성 → 시군구추진실적관리 → 일반현황 → 사업장폐기물 증빙자료에 수기 작성한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업로드 한다.

4

자원순환성과관리 시스템 사용 메뉴얼

1. 추진실적 작성 절차 및 유의사항



추진실적 유의사항

(생활폐기물)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통계)]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1차 처리량 일치하게 시스템 작성 방법에 따라 입력

(사업장폐기물) 올라시스템과 연계하여 입력(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불러오기)하되, 올라로 입력하지 않는 경우, 올라로 실적 데이터가 없는 경우 시스템 화면에 따라 수기(手記) 입력

2. 로그인 및 회원가입

1. 자원순환정보시스템(<https://www.recycling-info.or.kr>) 성과관리 로그인

[자원순환성과관리 로그인]을 선택한 후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 기억나지 않을 경우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신규 회원가입

2. 담당자 변경 시(신규 회원가입)

회원가입

STEP 01 약관동의 STEP 02 필수정보입력 STEP 03 가입완료

○ 자원순환(통계·창업) ● **성과관리** ○ 공용(자원순환/운영평가) ○ OpneAPI 사용신청
 자원순환 통계입력(관리·지원) 공공시설처리업체 및 창업관련 사용자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자는 "성과관리" 항목을 꼭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문의번호: 032-590-5077~9

이용약관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이용약관(안)
 제 1장 총칙

☞ 반드시 [성과관리]를 선택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회원님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려없이 입력하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보안솔루션에 의해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 [성과관리시스템 문의전화 : 032-590-5077-9](#)

* 필수입력

이름 * 김서름 * 이름을 시킬명이 아닌 실사용하시는 담당자 성함으로 작성하세요.

아이디 * secur111 * 중복 확인 * 6-16자 영문자 영문, 숫자 조합만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 ●●●●●●●● * 영문, 숫자, 특수문자(~!@#%&*^_"~) 포함 9-16자 입력

비밀번호 확인 * ●●●●●●●●

전화번호 * 02 - 1234 - 5678

FAX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010 - 1234 - 3456 * SMS 전송 여부

이메일주소 * abcd@korea.kr * 이메일 발송 여부

가입유형 * 시도담당자

지자체 * 서울특별시 / 종로구

첨부파일 * 공무원증 사본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보기](#)

선택
사업장
한국환경공단-본사
한국환경공단-지사
환경부
시도담당자
시군구담당자

QUICK

- ☞ 회원가입유형은 『시도담당자』와 『시군구담당자』를 구분하여 선택하고
- ☞ 공무원증 사본(앞면)을 첨부합니다.

3. 시·군·구 추진실적 작성

1. 실적입력 일반현황 신규 및 저장

- ☞ 메뉴 : [목표이행관리]-[지자체]추진실적작성-[시군구추진실적관리]
- ☞ [일반현황] → ②[신규]를 선택 후 실적년도 '2022년' 확인 후 ③[저장]
- ☞ ④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실적량 증빙자료 등이 있는 경우 자료 업로드
- ☞ ⑤ [생활폐기물 실적관리] 선택

3. 생활폐기물 부문 실적입력

- 생활폐기물 실적관리

- ☞ 생활폐기물(가정) 배출방식에 따라, 분리배출, 종량제, 음식물류로 구분하여 작성
- ☞ 추진실적 입력하기 위해, 오른쪽 하단의 [입력]버튼 선택
- ☞ [입력]버튼 선택시 [지자체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실적작성] 팝업창 생성

- [팝업창] 화면 설명

- ☞ ① 폐기물의 1차 처리방법에 따라 재활용 처리현황, 중간처분 처리현황, 최종처분 처리현황으로 구분됨
- ☞ ② [행추가], [행삭제], [저장]을 이용하여 폐기물 처리방법별, 잔재물 처리업체별 추진실적 작성
- ☞ ③ 최종 작성 완료 후 [적용] 선택

- [팝업창] 화면 설명



☞ ① 처리방법 및 처리현황(1차 처리)

- [자가/위탁] : '자가'는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에 스스로 처리할 경우 '위탁'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또는 다른 시군구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입력
- [폐기물처리량]: 폐기물 처리량(=발생량)을 입력
- [처리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입력
- [처리장소/처리자]: [자가]일 경우 관할구역 자동입력, [위탁]일 경우 위탁업체 처리 장소 선택하여 입력되며, 처리자 선택 시 적용 가능한 처리업체비율이 있는 경우, 처리업체비율 자동 적용
- [산정기준]: 산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실중량, 처리업체비율, 배출계수 순으로 적용 가능한 산정기준을 선정하여 입력(적용 가능한 처리업체비율이 있는 경우, 산정기준 우선 순위에 따라 배출계수를 선택할 수 없음)

☞ ② 잔재물발생 및 처리현황 (2차 처리)

- [잔재물발생량] : 1차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잔재물양 (배출계수 선택 시 자동 입력)
- [중간처분량/최종처분량/재활용량]: 산정기준이 실중량인 경우 잔재물 2차 처리방법에 따른 양을 기재
* 배출계수인 경우 전량 최종처분량에 입력됨
- [처리자]: 발생한 잔재물을 2차 처리(중간처분/최종처분/재활용)한 처리 업체명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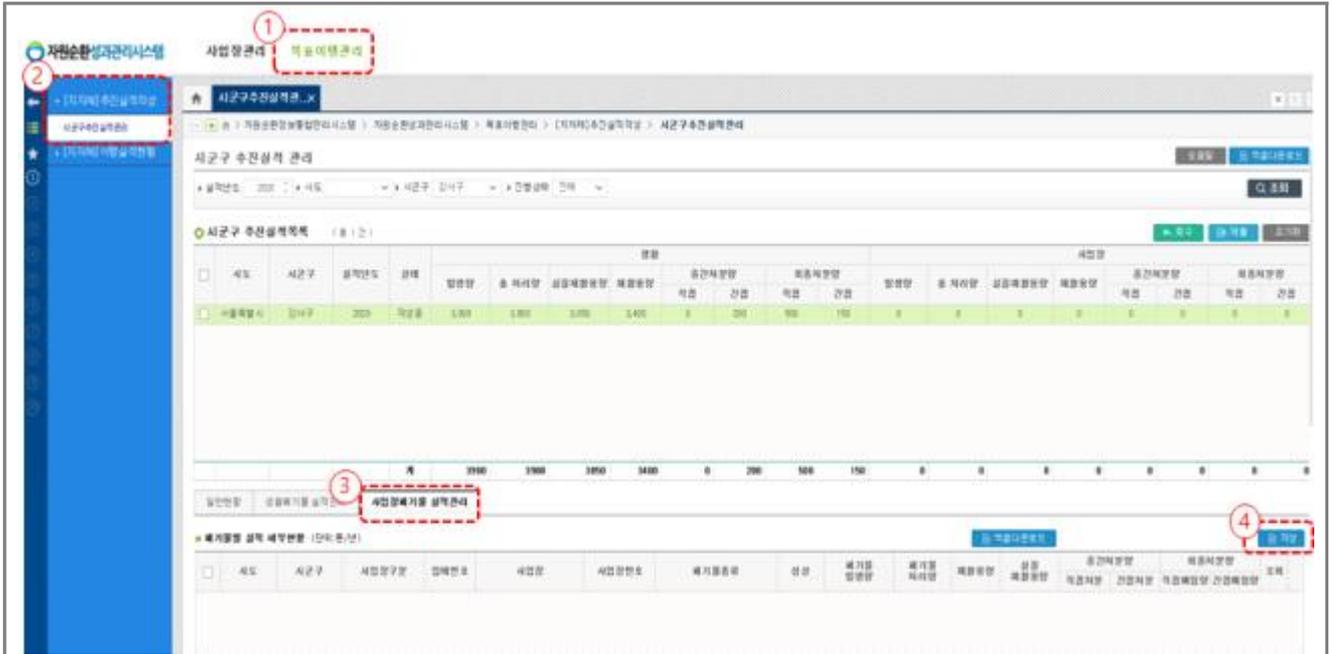
- 생활폐기물 실적관리

폐기물종류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처리량	잔재물량	실질 재활용량	중간처분량		최종처분량		합계
					목적처분	간접처분	목적처분량	간접처분량	
일반폐기물	62,250	62,250	1,250	61,000	0	1,000	12,436.25	입력	
분리배출	2,000	2,000	1,000	1,000	0	0	1,270	입력	
음식물	300	300	0	0	0	0	300	입력	

☞ 입력한 세부 실적을 합산하여 생활폐기물 종류별(중량제, 분리배출, 음식물)로 실질재활용량 및 최종처분량 자동 계산

4. 사업장폐기물 부문 실적입력

- 사업장폐기물 실적관리



- ☞ ① 목표이행관리 - ② [지자체]추진실적작성 - 시군구추진실적관리
- ☞ ③ [사업장폐기물 실적관리]
- ☞ ④ [작성] 선택

- 올바로실적 불러오기



- ☞ ①[올바로 실적 불러오기] → ②해당 사업장에 대한 '업체번호'또는 '업체명' 입력 후 조회 → ③해당 사업장 올바로실적을 확인*하고 체크 → ⑤[선택]하면 실적보고 신고된 폐기물 현황이 출력됨
- * 실적이 2개를 불러와야하는 경우(지정폐기물실적신고, 사업장일반폐기물 실적신고)가 존재하며, 상태가 [실적확정] 또는 [제출완료]인 경우만 불러오며, 각 지자체 담당자 올바로 실적 최종 확인 후 선택요망

- 올바른 실적 불러오기

[자치제] 사업장 실적 역출 완료

○ [자치제] 사업장 실적 관리

○ 폐기물별 실적 세부현황 (단위: 톤)

배고	시도	시군구	사업장구분	업체번호	사업장	사업자번호	폐기물종류	성상	폐기물량(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20001383	마포주공합수시설	104-83-00689	51-02-01	C(1)-02-011 복수처리시설	고장	216.52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20001383	마포주공합수시설	104-83-00689	51-07-01	(51-07-01) 복수처리시설	고장	1도 0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20001383	마포주공합수시설	104-83-00689	51-08-01	(51-08-01) 생활폐기물 소	고장	28,201.77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20001383	마포주공합수시설	104-83-00689	51-08-03	(51-08-03) 생활폐기물 소	고장	28,201.77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20001383	마포주공합수시설	104-83-00689	51-08-03	(51-08-03) 생활폐기물 소	고장	28,201.77

①

②

③

구분	폐기/취득	처리내역				실적자료 연번	산정기준	관세율	관세율 적용 및 처리내역					
		폐기물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장소	처리업체명				관세율	관세율 적용	관세율 적용	관세율 적용		
회수처분	취득	216.52		20001383	(주)에스비이(주)	0	0	0	0	0	0	0		
회수처분	취득	132.81		20001383	(주)에스비이(주)	0	0	132.81	0	0	0	0		
재활용	취득	22,608.27	0208	20417641	한국산업(주)	88.1	287.81	22,320.46	0.12	26.84	처리업체 비	22,488	6.8	0
회수처분	취득	1,809.28		20002978	우도환경(주)	27.58	22.81	1,836.8	0	0	0	0	0	
회수처분	취득	286.27		20001383	(주)에스비이(주)	0.4	0.05	287.72	0	0	0	0	0	

① 선택한 사업장(공공환경기초시설)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이 자동으로 작성 → ② 처리업체 비율 적용가능 사업장은 산정기준에 처리업체비율 자동 적용 ③ [임시저장] 후 [적용]

- 수기입력 (올바로 실적을 불러올 수 없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자치제] 사업장 실적 역출 완료

○ [자치제] 사업장 실적 관리

○ 폐기물별 실적 세부현황 (단위: 톤)

배고	시도	시군구	사업장구분	업체번호	사업장	사업자번호	폐기물종류	성상	폐기물량(톤)	구분	폐기/취득	폐기물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장
	서울특별시	문정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장번호	000-00-00000	01-01-01	(01-01-01) 복수처리시설	고장	0	0	0	0	0	0

①

②

구분	폐기/취득	처리내역				실적자료 연번	산정기준	관세율	관세율 적용 및 처리내역				
		처리장소	처리업체명	처리량	처리방법				관세율	관세율 적용	관세율 적용	관세율 적용	
회수처분	취득	0	0	0	0	0	0	0	0	0	0	0	0

① [행추가]를 선택하여 행삽입 또는 [행삭제]를 선택하여 행삭제 가능 →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업체별로 추진실적 입력 → ② [임시저장] 후 [적용]

* 단, 수기로 [행추가]하여 입력하는 경우는 산정기준 [처리업체비율] 적용 불가

- 잔재물 발생 및 처리내역 작성

비고	처리장소	업체-처리업체명	잔재물 발생		잔재물 발생 및 처리내역	
			잔재물 발생량	잔재물 발생비율(%)	잔재물 발생량	잔재물 발생비율(%)
	3311 (주)케이비아이4		0	0	0	0
	3311 (주)케이비아이4		0	0	0	0
	3311 (주)케이비아이4		0	0	0	0
	3311 (주)케이비아이4		0	0	0	0
	3251 우도순매물지장		0	0	0	0
잔재물 산정기준을 확인해 주십시오.	3176 한국산업(주)		5	1,142.27	0	1,142.27
잔재물 산정기준을 확인해 주십시오.	3111 제정화학공업(주)		10	0.45	0	0.45

☞ 잔재물 [산정기준] 작성 가이드

① [산정기준]은 자가/위탁 처리 후 새로이 발생된 폐기물(잔재물)의 산정기준으로 1순위 실중량, 2순위 업체비율, 3순위 배출계수 중 선택이 가능

- (실중량) 잔재물 발생 실제량을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된 경우 선택하고, 잔재물 발생량을 입력하고 ①[산정기준]에서 '실중량'으로 선택하면 ② '실중량' 자동 선택되며 잔재물 발생량과 처리량에 대한 중량을 직접입력 (단, 잔재물량과 처리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첨부)
- (처리업체비율) 위탁업체가 '중간처분/재활용 실적보고'시 잔재물 정보내역을 입력한 경우에 한해 [올바로 불러오기]를 통해 자동입력(위탁업체 잔재물량 미입력시 연계안됨)
- (배출계수) '실중량'과 '처리업체비율'이 적용할 수 없을 때 배출계수를 입력하며 ①[산정기준] '배출계수' 입력 시 ②[산정기준]에 '배출계수' 자동적용
* 배출계수 선택시 잔재물량은 전량 최종처분으로 입력됨

5. 추진실적 제출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실적제출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시군구 추진실적 관리' (Municipal Progress Management) system.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시군구 추진실적 관리' and '시군구 실적제출'. A table lists municipalities with columns for '시군구', '실제수량', '계획수량', '잔재물량', and '잔재물량률'. A blue star icon is placed over the '실중량' (Actual Weight) column. A red dashed box highlights a table below the main one, which lists '시군구 실적내역' (Municipal Performance Details) with columns for '시군구', '사업장명', '잔재물량', '잔재물량률', '처리내역', and '처리내역률'. A yellow warning dialog box is overlaid on the screen, stating '실중량 제출시 증빙 첨부파일을 입력하여 주세요' (Please enter supporting files when submitting actual weight).

☞ ① [생활폐기물 실적관리] [사업장폐기물 실적관리] 화면에서 제출 전 최종 점검 → ② 추진실적 목록 체크 → ③ [제출]하면 시군구 추진실적이 제출 완료됨

★ '실중량 제출시 증빙 첨부파일을 입력하여 주세요' 라는 팝업창이 뜨면,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실적 산정기준에 '실중량'을 선택하였으나, 그에 따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로 **증빙서류*필첨**

- * (증빙서류 예시) 1. 잔재물량이 기재되어있는 위탁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산출내역서
 2. 공공처리시설의 매월/매년 보고자료
 3. 그 외 잔재물량과 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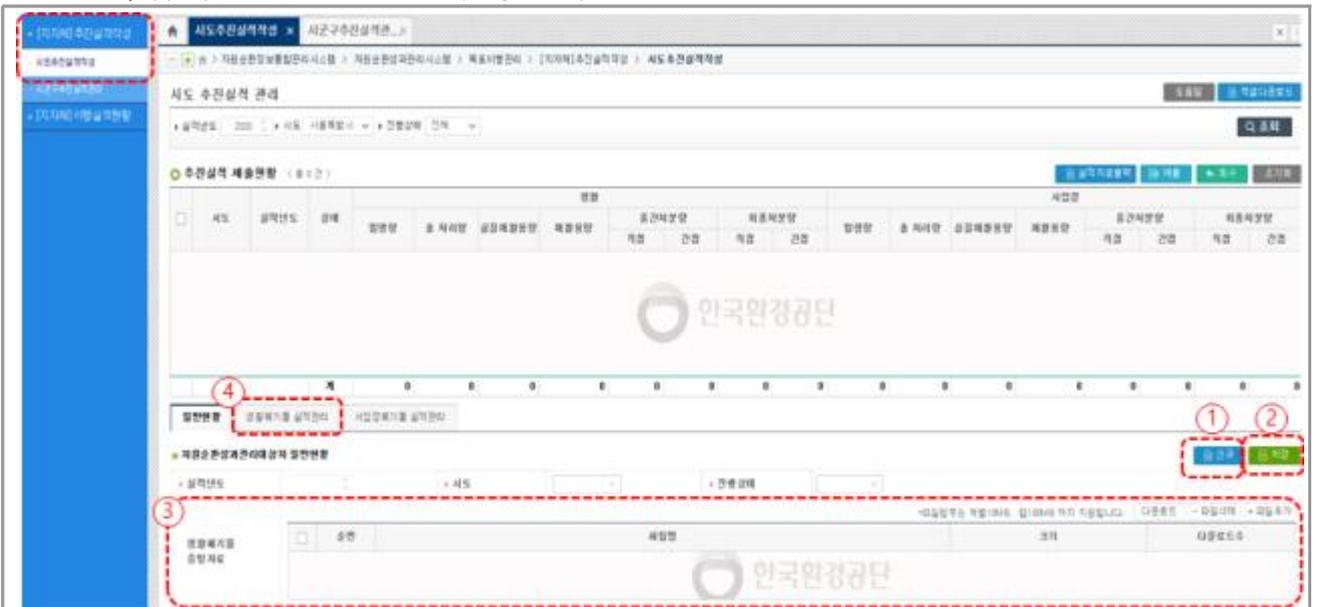
4. 시·도 추진실적 작성

1. 시군구 추진실적 접수



- ☞ 메뉴 : [목표이행관리]-[시군구추진실적관리]
- ☞ [실적년도] '2022년' 확인 → ① [조회]선택 → ② 상태 '제출'인 시군구 자료 검토 → 검토완료 후 시군구 목록을 체크한 후 → ⑥ [접수] 선택
- ☞ 상태 '제출'인 시군구 자료 검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③ [반려] 선택
- ※ 관할 시군구 추진실적 누락 여부 확인하여 접수

2. 실적입력 일반현황 신규 및 저장



- ☞ 메뉴 : [목표이행관리] - [시도 추진실적작성] - [일반현황]
- ☞ 실적년도 '2022년' 확인 후 조회 ① [신규] 선택 → ② [저장] → ③ [생활폐기물 증빙자료] [사업장폐기물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업로드 → ④ [생활폐기물 실적관리] 탭 선택

3. 생활폐기물 부문 실적입력(시군구 취합 및 시도 입력)

☞ 메뉴 : [목표이행관리] - [시도추진실적작성] - [생활폐기물 실적관리]

☞ ① [시군구취합] 선택 하면 시군구 실적* 불러오기 가능

* [목표이행관리] - [시군구추진실적관리] - 상태'접수'인 추진실적을 불러옴

☞ ② [입력] 선택할 경우, 불러온 관할 시군구 취합 실적 확인 가능

3. 사업장폐기물 부문 실적입력(시군구 취합 및 시도 입력)

☞ 메뉴 : [목표이행관리] - [시도추진실적작성] - [사업장폐기물 실적관리]

☞ [사업장폐기물 실적관리] 선택 후 ① [시군구 취합] 선택하면 시군구 실적*을 불러오기 가능

* [목표이행관리]-[시군구추진실적관리]-상태'접수'인 추진실적을 불러옴

☞ 시도 추진실적(직영)에 대한 입력이 필요한 경우 ② [일괄작성] 선택 → [팝업창] 작성

* 작성방법은 시군구 추진실적 작성과 동일

4. 시도 추진실적 제출

시도 추진실적작성

실적년도: 2022년

시도: 서울특별시

추진실적 제출현황 (총 1건)

시도	실적년도	상태	병합					사업장										
			발생량	총 처리량	실질처리량	중간처리량	최종처리량	발생량	총 처리량	실질처리량	중간처리량	최종처리량						
서울특별시	2022	작성	2,273.92	2,273.92	933,202.07	1,132.36	821.71	24,057	315,447	498,189	15,614.2	5,157.02	3,938.43	5,136.05	20.91	0	0	2,168.99

일괄현황: 신청해기를 실적관리, 사업장해기를 실적관리

자율순환성관리대상자 일괄현황

실적년도: 2022년, 시도: 서울특별시, 관할상태: 작성중

첨부파일: 순번, 파일명, 크기, 다운로드수

☞ 메뉴 : [목표이행관리]-[시도추진실적작성]

☞ ① 실적년도 '2022년' 확인 ② [조회] 선택 ③ 체크 ④ [제출]

참고 1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

처리 구분	처 리 방 법	
	처리분류	세분류 번호
자가 처리	재활용	원형 재사용[1001], 수리·수선 재사용[1002], 원료 제조[1003], 직접 제품제조[1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1005], 토질개선에 사용[1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1007], 직접 에너지회수[1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1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1010],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1011]
	중간처분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매립	관리형 매립시설[1201], 차단형 매립시설[1202], 기타 매립시설[1203]
	해역배출	[1300]
	수출	[1500]
위탁 처리	재활용	원형 재사용[2001], 수리·수선 재사용[2002], 원료 제조[2003], 직접 제품제조[2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2005], 토질개선에 사용[2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2007], 직접 에너지회수[2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2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2010],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2011]
	중간처분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 소각[2117], 국가 소각[2118], 기타[2119]
	매립	민간관리형 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 매립시설[2202], 기타 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2205], 국가 매립시설[2206]
	해역배출	[2300]

비고 : 국가 소각 및 국가 매립시설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참고 2 잔재물의 개념 및 산정방식

□ 잔재물이란?

- 재활용 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 중 실제 재활용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과정에서 선별되거나 재활용 공정(가공, 제조, 성형, 포장 작업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
- 중간처분 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 중 폐기물을 중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근거 :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53호, 2019.3.19.) 제2조
 사·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예규 제649호, 2019.3.19.)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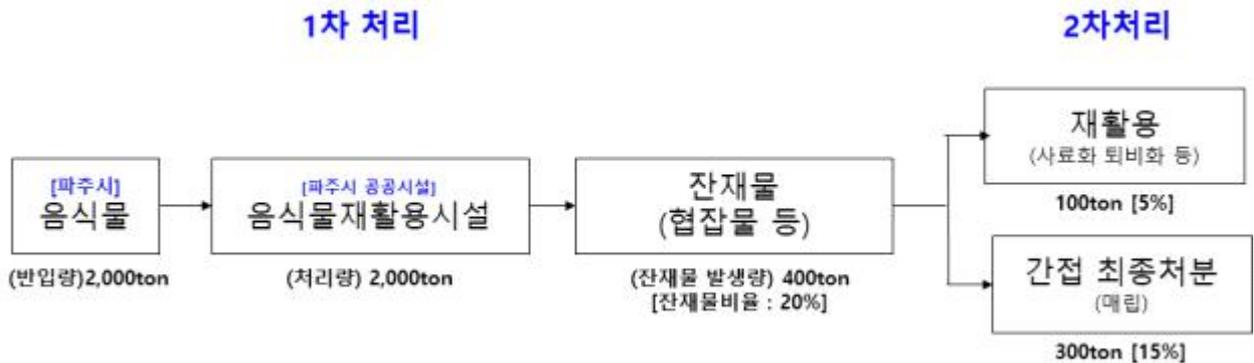
□ 잔재물 발생 및 처리방법(사례)

사례1) (51-03-01)폐합성수지를 (2010)중간가공 폐기물 제조로 재활용 하는 경우	
	폐합성수지를 파/분쇄 후 연료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파/분쇄 한 폐합성수지(중간가공 폐기물) 및 고철, 토사, 분진 등 잔재물 발생 ※ 파/분쇄 등 중간가공 과정을 거친 폐기물(중간가공폐기물)도 잔재물에 포함
사례2) (04-02-00)그 밖의 폐유기용제, (06-01-99)그 밖의 폐광물유, (06-03-00)그 밖의 폐유 등을 (2009)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로 재활용 하는 경우	
	정제, 여과, 증류 등의 공정을 거쳐 연료, 재생원료 등으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중금속 함유가 높은 슬러지, 폐수, 공정오니 등 잔재물 발생
사례3) (51-17-19)그 밖의 동물성잔재물을 (2005)농업생산활동에 사용으로 재활용 하는 경우	
	주로 공정 중에 발생하는 공정오니와 폐수, 기타 잔재물의 형태로 발생
사례4)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소각에 따른 바닥재, 비산재 등 잔재물 발생
사례5) 폐기물을 고형화·안정화하는 경우	
	폐기물에 첨가제, 고화제 등을 투입하여 안정화 처리물, 시멘트 고형화 처리물, 고화 처리물,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그 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발생

□ 잔재물 산정방식 우선순위

① (실중량)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만 스스로 처리(또는 위탁처리시설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만 위탁 처리)하여 처리시설에서 발생 되는 잔재물 양과 잔재물의 처리 방법이 파악이 가능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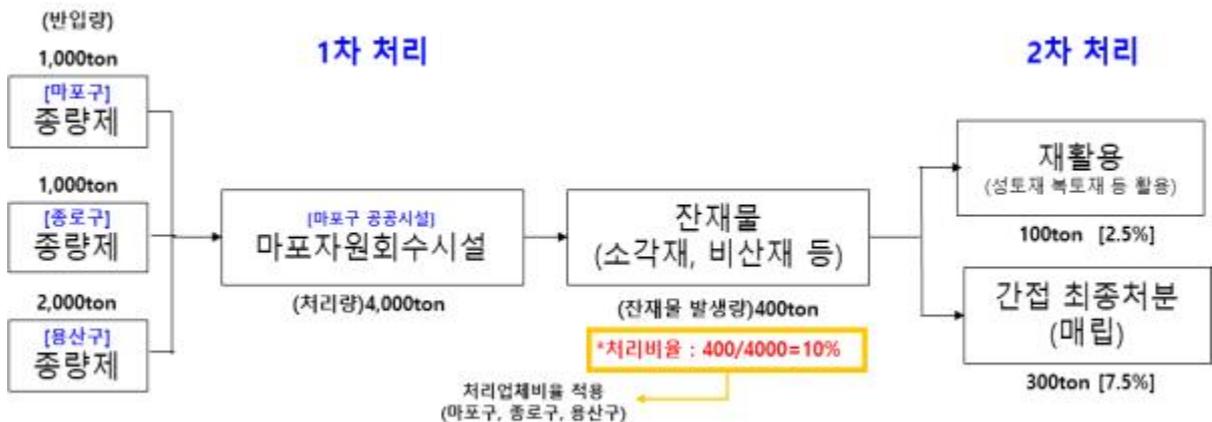
- (예시) 파주시 음식물처리시설이 파주시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만 처리하는 경우



② (처리업체 비율*) 다수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여러 종류의 폐기물이 혼합 처리되어 ①(실중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처리업체비율 = 연간잔재물 발생량/연간 처리량

- (예시) 서울시 마포구의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서울시 다른 지역구의 생활폐기물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위탁 처리한 다른 지역구도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처리비율을 일괄적용)



③ (배출계수) ①실중량이나 ②처리업체 비율의 방법으로 잔재물 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처리시설의 폐쇄, 부도 등)

* [적용원칙] 환경부 예규 제649호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표3

□ 주요 질의 응답 내용

Q. 생활폐기물 대상범위는?

A. 종량제 등 혼합배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 다량배출자를 포함)로 분류하여 입력하며, 이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 생활폐기물(가정)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장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사업장생활계)은 생활폐기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사업장폐기물 올바른실적을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 작성방법은?

A. 사업장폐기물 올바른 실적을 성과관리시스템이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올바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 를 작성하지 않고 서면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경우

→ 지자체 서면 제출한 배출 및 실적보고서 기준으로 수기 입력하되, 해당 실적보고서 시스템에 첨부 후 제출바랍니다.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바로 사용권고

2. 관할관청(환경청, 지자체)에서 ‘실적보고서’ 실적확정을 하지 않은 경우

→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해당사항 확인 및 조치바랍니다.

3. 기존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 업체가 변경되는 등 기존 올바로 시스템 실적을 연계하지 못하는 경우

→ 변경된 위탁 운영 업체의 올바로 실적보고서를 조회하여 불러와 제출하거나, 담당자 문의바랍니다.

□ [생활폐기물] 오작성 사례

사례 1. 잔재물 산정기준 및 잔재물 발생량 누락 및 오기재

- (1) 잔재물 산정기준 **실중량** 선택 후 그에 따른 증빙*을 누락한 경우
→ 잔재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입력

* 증빙 예시 : 해당 시설의 폐기물 재활용/중간처분 실적보고서, 시설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단, 반입량 증빙이 별도 필요), 그 외 행정자료(위탁업체의 운영실적보고서) 등

- (2) 분리배출 폐기물 발생량에 공동주택 발생량(민간 재활용사업자 위탁량)을 누락한 경우

사례 2. 발생량이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 발생량과 불일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 자료에서 입력한 발생량(=처리량)과 성과관리 추진실적 발생량 및 1차 처리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통계 확정 시 통계 발생량에 맞춰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폐기물] 오작성 사례

사례 1. 선정된 환경기초시설이 아닌 다른 환경기초시설 추진실적을 작성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추진실적 작성 대상 사업장은 목표설정 당시 기준으로 선정된 환경기초시설(466개소*)입니다. 해당 시설이 아닌 시설의 추진실적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사례 2. 환경기초시설 종류 구분을 정확하지 않은 경우

추진실적 작성 시 환경기초시설* 종류를 오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중 택1